

# 스탠드바이 信用狀統一規則(ISP98)과 貨換信用狀統一規則(UCP 500)과의 比較研究

金 榮 勳\*

- 
- I. 序 論
  - II. ISP98과 UCP 500 과의 비교
    - 1. 별도의 규칙에 대한 필요성
    - 2. ISP98의 기능 및 효과
    - 3. 주요사항별 비교
  - III. 結 論
- 

## I. 序 論

1998년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제정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인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이하 ISP98이라 한다.)가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다.<sup>1)</sup> ISP98이 채택되기 전, 은행 또는 상인들은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이 자신들이 발행 또는 사용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칙으로서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거래에 임했었다. 물론 ISP98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비록 UCP와 같이 폭넓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통일규칙은 있었다.

언급한 바와 같은 UCP 이외에도 ICC's Uniform Rules for Demand Gua-

---

\*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1) ICC Publication No.590으로 공표되었고, 현재 ICC에서 Hebrew, Spanish, Turkish 어로의 번역작업이 완료되었고, German, Japanese, Russian, Sloverian어로의 번역작업이 진행중이다.

rantees(URDG),<sup>2)</sup>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UN Convention) 1995,<sup>3)</sup> ICC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URCG),<sup>4)</sup> ICC Uniform Rules for Contract Bonds(URCB) 등이 제정되었고,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sup>5)</sup> the 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Interpretive Ruling 등이 개정됨으로써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칙들이 많이 있었다.<sup>6)</sup>

그러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신용장이라는 특성, 즉 개설은행에 의한 제1차적인 지급채무를 체화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과거에는 UCP를 제외하고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준거규칙으로서 명시할만한 성질의 규칙은 존재치 않았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차적인 채무 또는 약정에 대하여 규정한 규칙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UCP가 준거규칙으로서 그간 커다란 역할을 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나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UCP는, 그 제정시부터 현재까지의 명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상업, 화환(commercial, documentary) 신용장에 적합한 규칙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는 부적합한 조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ISP98은 순수하게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규율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물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직까지는 ISP98의 활용에 대한 실례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탓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탓에 사회과학논문의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문헌조사를 통하여 본 규칙이 갖고 있는 의의와 역할들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효

2) 청구출급보증서에 관한 통일규칙(1992), ICC, Publication No.438.

3) 스탠드바이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1995).

4) 계약보증서에 관한 통일규칙(1978), ICC Publication No.325.

5) 이하에서는 미국통일상법전에서 신용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편을 1995년에 개정된 제5편은 '95 UCC 5편'을, 개정전 제5편은 '62 UCC 5편'으로 지칭한다.

6) OCC Interpretive Ruling, 12 C.F.R. Section 7, 1016(1996)을 가리킨다.

7) 이처럼 UCP 상의 규정들이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와는 상충되는 규정들이 많았던 관계로 많은 규정들은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했다. 여기에는 UCP 500에서의 서류에 관한 규정들(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서류들)과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금상환약정, 할부어음발행(instalment drawing) 등을 다루고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독립된 규칙이 필요했던 이유를 UCP의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의 부적합성에 비추어 설명한 후, 독립된 규칙으로서 ISP98의 역할 그리고 많은 사항 중 서류의 제시, 서류의 검토, 신용장의 양도 그리고 신용장대금의 양도 등을 중심으로 UCP와 비교함으로써 ISP98의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ISP98과 UCP 500 과의 비교

### 1. 별도의 규칙에 대한 필요성

1983년 개정 UCP 400에 이르기까지 UCP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그 적용범위 속에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sup>8)</sup>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기술된 바와 같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적합한 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UCP를 그 준거 규범으로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1962년 개정안인 UCP 222, 1974년 개정안인 UCP 290가 사용되던 시기에도 역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UCP를 준거규범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UCP가 어떤 일국의 법제에 속하는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행들은 모아놓은 집합체이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현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UCP 상의 개별조항들은 변경 또는 적용배제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sup>9)</sup> 어떠한 약정(undertakings)에도 UCP의 적용을 합의함으로써,

8) 이는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은행업자들의 염려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월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우회수단으로써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개발·사용하였으나, 이것이 보증서와 구별되는 약정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규범이 없었던 관계로 UCP에 그 적용을 규정,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발행을 월권행위가 아닌 것으로 한 것이다(Roy Goode,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6, p.16 참조).

9) 물론 사적 당사자간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도 대부분이 임의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UCP가 그 성격이 법률보다 하위개념에 속한다는 표현이 UCP 상의 모든 규정을 변경 또는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UCP 500 제 3 조, 제 4 조 등을 변경 또는 배제하는 합의를 허락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당사자 자치의 원

그 적용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자들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전통적인 신용장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sup>10)</sup>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UCP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었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도 UCP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CP와 스탠드바이 신용장사이의 관계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다.

### (1) 일관성 문제

UCP에서는 서류의 수리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으로 신용장상의 조건과 각 서류와의 일치성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더하여 각 서류 상호간의 일관성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의 특성과 괴리가 있다.<sup>11)</sup>

이처럼 서류수리요건으로 일관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업(commercial) 신용장이 개입되게 되는 기본거래가 전체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commercial 신용장하에서 제시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물품제공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취득되는 것이므로 그 일관성 내지 연계성의 부족이 실제 기본거래에서의 하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연계성을 요구한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경우에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는 상업(commercial) 신용장과 달리 기본거래상의 상대방 즉, 개설의뢰인을 향한 어떤 행위의 이행과정에서 취득되지 않고, 오히려 개설의뢰인측의 채무불이행이라는

---

칙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 10) 그러나, 영국과 유럽에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신용장이 아닌, 보증(guarantee)으로 보았다. 그 결과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where applicable...이라고 아주 미약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측의 대표자들의 영향력이 ICC 내부에서 거센 탓이다(James E. Byrne,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New Rules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UCCLJ*, vol.32, fall, 1999, p.153).
- 11) 은행은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본다(UCP 500 제 13 조).
- 12) 일관성문제는 남용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도 남용되어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이 조항을 근거로 많은 하자가 제기되고 있다 한다(James E. Byrne, *op. cit.*, p.156, note.21.); 拙稿, "信用狀去來에서의 禁反言法理에 관한 解釋," 貿易商務研究 제 12 권, 韓國貿易商務學會, 1999, 제 434 쪽, 각주 9 참조.

마이너스적인 행위를 기초로 수익자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사항에는 일관성의 존재가 가능하지만,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는, 어찌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유는 각 서류간의 모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순점을 통해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경우에는 서류의 수리지질사유로 서류 상호간의 연계성 또는 일관성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sup>14)</sup>

## (2) 할부어음 발행

1994년 개정 UCP 500 제 41 조에서는 할부선적과 함께 할부어음 발행을 규정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drawing'이라는 용어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수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한다.<sup>15)</sup>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 어려움만 증폭시키고 있다. UCP 500 제 41 조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할부방식에 의한 어음발행 및/또는 선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할부분이 그 할부분을 위하여 허용된 기간내에 어음발행 및/또는 선적되지 아니하였다면,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찬히 살펴보면 이 규정은 오히려 상업신용장에 더욱 더 적합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즉 상품의 매매라는 기본 거래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의 물품수량을 예견, 전매를 약정하고 있을 수 있는 개설의뢰인(매수인)은 약정된 기일내에 물품을 수령치 못하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할부선적 중의 한 회가 이행실패하게 되면 당사자들의 당초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설의뢰인은 수익자가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개설의뢰인은 차후에도 동일한 양의 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할 수 있을 것인

13) Georges Affaki, "ISP, UCP or URDG: What are the optimal rules for your standby," *Documentary Credit World*, June 1999, p.35.

14) ISP98 4.03.

15) Bernard Whebble, ICC Publication No.411, *UCP 1974/1983 Revision Compared and Explained* 72(1984)(James E. Byrne, *op. cit.*, p.156, note.25 재인용); UCP 500 & 400 Compared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Charles del Busto,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p.108).

가에 대하여 확실한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어느 한 회의 어음의 미발행이 개설의뢰인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그러한 할부어음발행이 예견된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어음의 미발행이 기본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는 과거의 어떤 미발행과 관계없이 추후에 어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며 이 기대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sup>16)</sup> 이처럼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태동하는 기본거래와 상업(commercial) 신용장이 태동하는 기본거래의 성격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될 것임을 예견, UCP500 & 400 Compared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up>17)</sup>

### (3) 운송서류 제시기간

UCP500 제 43 조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송서류의 제시를 위한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유효기일에 추가하여 제 2의 마감일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서류의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의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선적일 이후부터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한 제시를 행하여야 할 특정한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선적일 이후부터 21 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특정의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 후 21 일이 경과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송서류 특히,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는 그 속성에 권리증권적 성격을 화체하고 있어 물품의 수령에 그 서류의 제시가 요구되기 때문에, 서류의 지연된 제시로 인해 매수인측에 채선료나 불필요한 저장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16) 신용장거래가 갖는 독립성은 단순히 신용장거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장이 개입하게 되는 기본거래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중의 일방에게 유리한 위치를 주는 것이 반드시 기본거래에서의 유리한 위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 거래매커니즘을 통해 이익과 불이익이 치유 또는 상쇄된다면 이는 신용장거래에서 공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업적인 산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17) 주 15 참조.

한편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개설의뢰인측의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은 무척 낮다.

예로, commercial 스탠드바이 신용장<sup>18)</sup> 거래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는 신용장과 관계없이 진행된다. 즉, 이 경우 운송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여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매수인에게 전달되고 매수인은 곧바로 물품을 수령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 상황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수익자)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 서류를 제시하므로 그 서류는 선화증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본인 경우이고 아니면 비유통성의 서류가 첨부될 것이다. 따라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부적절하다.<sup>19)</sup>

## 2. ISP98의 기능 및 효과

### (1) 신용장거래관행의 명확화

UCP는 신용장거래관행의 많은 부분들을 조문화 했으나, 그 방법은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다.<sup>20)</sup> 또한 초기에는 그 사용주체를 신용장거래에 친숙한 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많은 원칙들이 기술되지 않았거나 또는 명료하게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한편 지난 60여 년동안 대금결제방식으로써 신용장의 사용이 증대되고 신용장거래에서 UCP의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이와 함께 그 사용주체들도 과거와는 달리 신용장거래

18) 신용장이 아닌 기타 지급수단으로의 대금지급에 있어 개설의뢰인이 물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대비해 발행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말한다('commercial standby' supports the obligations of an applicant to pay for goods or services in the event of non-payment by other methods). ISP98 서문 (General A/CN, 9/459, 23 April 1999, UNCITRAL 재인용).

19) ISP98 4.20(b); Roy Goode,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6, p.17, note.45 참조.

20) 물론 어떤 일정한 원칙없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UCP 각각의 개정시에는 그 개정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개정안에는 개정작업시에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Boris Kozolchyk, "Re UCP Article 13(a) &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1, 1995, p.33 참조).

21)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추상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UCP 500 제 3 조와 제 4 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에 많은 know-how나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자들도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에 UCP는 전문가들의 사용에 적합하게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는 탓에 확장된 사용주체들 간 해석상의 상이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 1996년의 원본(original)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는 그 예라 할 것이다.<sup>22)</sup> 물론 ISP98는 제 4.15 조에서 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외에도 ISP98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많은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명료하게 규정하려 애썼다.<sup>23)</sup>

첫째, UCP에서는 환어음분할발행(partial drawing)에 대한 의미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환어음분할발행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회 이상의 환어음의 발행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서는 이용가능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경우 환어음분할발행의 금지는 이용가능한 금액 전부이전 또는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건 관계없이 오직 1회의 환어음 발행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UCP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없다. ISP98에서는 'multiple drawing'과 'partial drawing'을 정의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sup>24)</sup>

둘째, 'clean'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도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clean이라는 용어는 상업(commercial)신용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무담보신용장 즉, 상업신용장에서 통상적으로 제시를 요구하는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신용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ISP98에서는 환어음 또는 지급요청서(demand)만의 제시를 규정하고 있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5)</sup>

셋째, automatic amendments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은행가와 상인들은 용어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축약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22) ICC 국제무역정보, 대한상공회의소 ICC 한국위원회, 1999.8, 제 151~156 쪽; *Documentary Credit World*, June 1999, pp.14~19 참조.

23) Commentary, "Banks Prepare for ISP98," *Letter of Credit Update*, Dec., 1998, p.13.

24) ISP98 3.08(d). partial drawing은 이용가능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된 것을 의미하고, multiple drawing은 2회 이상의 환어음발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UCP 500 Art.40.

25) ISP98 1.10(a)(v).



결과를 기술하지 않은 채, 'automatic', 'evergreen', 'automatic amendments'와 같은 용어를 스탠드바이 신용장 문면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UCP를 통해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ISP98에서는 이점을 명료시켰다.

즉,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명확한 유효기일을 기재한 형태로 발행되며, 다만 그 유효기일 이전의 특정기간 이내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변경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6)</sup>

넷째는 독립성원칙인데,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독립성원칙이 아닌가 한다. UCP에서는 이 독립성원칙을<sup>27)</sup> 아주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신용장거래에 정통하지 못한, 특별히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법률가들은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짧은 문장은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sup>28)</sup>

그 결과 UCP의 규정만으로는 불안한 당사자들은 UCP를 준거규범으로 하면 서도 그것이 개설은행의 제 1 차적인 책임을 화체한 약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absolute', 'primary', 'abstract', 'payable from the issuer's own funds', 'payable on demand'와 같은 용어들을 스탠드바이 신용장상에 추가하여 발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으로 그치면, 법률가들은 ISP98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곧 ISP98의 사용빈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sup>29)</sup> 왜냐하면 ISP98은 법률이 아닌 관행을 모아놓은 집합체에 속하므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배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26) ISP98 2.06.

27) UCP500 Art.3.

28) 물론 긴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짧고 간결한 규정이 해석상의 분쟁발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ISP98의 지나치게 자세한 규정에 대한 또다른 견해는 본 글 결론에 가서 언급하였다.

29)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삽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스탠드바이 신용장도 전통적인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원인거래와는 독립된·별개의 거래임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 성격이 어떠한간에 통일된 규칙에 이러한 용어의 삽입을 규제하기만 하면, ISP98 하에서 UCP와 동일하게 독립성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고객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ISP98의 사용을 기피하고 중전과 마찬가지로 UCP를 준거규범으로 한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ISP98의 사용확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히 금지하거나 또는 사용을 제지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반영하여 ISP98은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단순히 금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용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고 또한 사용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할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ISP98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sup>30)</sup>

## (2) 법률과 관행과의 관계 명확화

ISP98은 법과 관행에 대한 상호고려에 대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 ISP98은 상사법이 그 명칭처럼 현실 상거래를 올바르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상거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른바 상사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건전한 관행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건전한 상거래 관행의 형성에 있어서의 일정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었다.<sup>31)</sup> 이처럼 ISP98은 그 초기부터 법률이 인간생활의 전반에 걸쳐 미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근거에 두고 입안된 것이다.

그 결과 법과 관행의 역할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예로 ISP98 1.15에서는 due issuance와 fraudulent or abusive drawing의 문제는 법률에 맡기고 있고, 관행을 통한 해결은 당사자들간의 일반적인 기대에 관한 문제들만으로 제한하고 있다.<sup>32)</sup>

## 3. 주요사항별 비교

### (1) 서류제시(Presentation)

#### ㉠ 불완전한 제시(incomplete presentation)<sup>33)</sup>

ISP98 3.20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일부만이 제시된

30) ISP98 1.06, 1.07, 1.10.

31) ISP98은 또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1995)(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입안에는 전세계의 현대적인 신용장 法源을 고려하여 행하여졌다.

32) ISP98 1.02(a), 6.06, 1.05; Georges Affaki, "The ISP98, UCP, URDG and the UNCITRAL CONVENTION," *Letter of Credit Update*, May 1999, p.21(ISP98은 그 적용범위에서 사기와 법원의 예비조치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1995)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ISP98 3.20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일부만이 제시된 경우를 'incomplete 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불완전한 제시'라고 번역하여 사용했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채출된)의 조건과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는 여기에서 말하는 불완전한 제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경우에 조차도 제시된 서류의 일치성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불완전한 제시를 수령한 후 남은 서류의 제시때까지 서류를 검토하지 않거나, 당해 불완전한 제시를 통지하지 않으면 후에 서류의 불일치를 근거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다.<sup>34)</sup>

한편 UCP 500 제 14 (b) 호에 의하면 은행은 서류의 수령시에 일치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sup>35)</sup> UCP 하에서는 신용장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제시된 때에야 비로소 서류검토의무가 생긴다고 추론하는 것도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은 그 제시가 불완전할지라도 제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하자의 통지시에, 제시된 서류상의 하자과 함께 불완전한 제시도, 역시 하자에 해당되므로, 통지하고 있고, 또한 수익자는 은행으로 하여금 이미 제시된 불완전한 제시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보류하고 남은 서류가 제시된 때에야 서류검토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UCP 또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논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본다.

#### ㉠ 유효기일 마지막 날 은행휴무의 위험부담자

UCP 500 제 44 조는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은행의 업무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 17 조의 사유로 인한 업무중단과 그 이외의 사유에 의한 업무중단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sup>36)</sup> 즉 제 17 조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서류제시기간의 종료일에 은행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업무가 개시되는 첫날까지 유효기일이 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가항력 등에 의한 사유로 인한 은행업무 중단

34) 이렇게 보면 은행은 각각의 제시분에 대하여 독립된 서류검토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5) 불완전한 제시는 그 제시된 서류상의 조건이 모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미제출된 서류로 인해 불일치한 서류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치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제시되어야 개시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완전한 제시시에도 서류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굳이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요구된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라고 표현하기엔 부적절한 단순한 행위로도 서류의 수리·거절결정은 가능하므로, 이때에도 서류검토의무를 부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36)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또는 신용장에 의하여 규정되었거나 또는 제 43 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최종일자가 제 17 조에 언급된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은행의 휴업일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규정된 유효기일 및/또는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 이후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최종일자는 그 은행의 다음 최초의 영업개시일까지 연장된다(UCP 500 제 44 조).

의 위험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sup>37)</sup>

commercial 신용장의 수익자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수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리스크의 부담 또는 분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달리 일반적으로 commercial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단순히 그 조건보다도 그 서류가 대표하는 물품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물품의 처분은 그러한 서류와 상환으로만 가능한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 하여도 물품을 포장하는 서류를 자신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경우는 이와 달라 제시되는 서류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첨부된다 하더라도 사본이나 비유통성의 서류가 제시되며 또한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시간이면 물품은 이미 개설의뢰인의 수중에 들어가 있을 것이므로, 수익자는 유일한 안식처로써 개설은행에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수익자에게 그 리스크를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sup>38)</sup>

또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그 특성상,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은행의 조건변경에 대한 합의나 조건위반에 대한 권리포기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즉,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서의 수익자의 환어음 발행, 개설은행에의 제시라는 상황은 곧 개설의뢰인이 곤란(다시 말해, 기본계약상의 채무이행 불능상태)을 겪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유효기일의 연장 등에 합의하는 등의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SP98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 UCP 500 제 47 조와 달리, 은행의 업무중단사유를 불가항력에 의한 것과 기타의 사항으로 이분하지 않고, 서류제시 또는 유효기일 마지막 날에 은행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영업재개일로부터

37) 이를 민법상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문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깊이있는 연구가 부족하여 명확하게 말 할 수는 없으나, 개설은행과 수익자는 모두 천재지변이라는 사유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따라서 개설은행은 자신의 과실없이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는 점, 즉 유효기일까지 서류를 수령할 채무를 자신의 과실없이 면제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위의 위험부담문제와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도 있지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볼때, 수익자는 자신의 과실없는 사유에 의하여 서류를 제시·대금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수익자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8) Georges Affaki, "The ISP98, UCP, URDG and the UNCITRAL CONVENTION: Are They Really Complementary?," *Letter of Credit Update*, May 1999, p.20 참조.

30 일의 기간까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합리적인 경우, 개설은행이 다른 제시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그 새로이 지정된 장소에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39)</sup>

#### ㉔ 운송서류제시기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SP98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경우에는 통상 운송서류 등이 첨부되는 경우가 드물고, 또한 그 제시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물품의 처분권을 화채한 선화증권 등은 아닐 것이므로, 서류를 늦게 제시하더라도 commercial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채선료 또는 저장료의 발생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유효기일 이외에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sup>40)</sup>

### (2) 서류검토(Examination)

#### ㉕ 서류비지정조건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ISP98은 기존의 신용장 거래속에서 표명되어 왔던 원칙들을 UCP보다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서류비지정조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ISP98에서는 신용장이라는 형태의 약정(undertaking)이 갖는 서류적인 특징(documentary character)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서류적 특징에 위배되는 서류비지정조건의 삽입을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41)</sup>

이처럼 은행이 서류비지정조건을 기피하는 것은 신용장의 근본적 성격, 즉 신용장은, 서류검토자인 은행의 업무외에 속하는 기본거래상의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된 약정이라는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그 기초를 둔다. 그러므로 은행이 이러한 서류비지정조건에 기초하여 자신의 확약을 회피할 수 있다면, 신용장의 독립적 성격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며, 또 다른 측면에서 당해 서류비지정조건의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한 은행은 추후 고객인 개설 의뢰인으로부터의 대금상환을 거절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신용장이 갖는 1 차적인 채무라는 성격이 퇴색되어 보증과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될

39) ISP98 3.13, 3.14.

40) ISP98 4.20(b).

41) ISP98 1.06(d), 4.11.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장의 서류적인 특징은 독립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원칙의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신용장거래에 서류비지정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UCP 400의 개정작업동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 UCP 500 제 13(c) 항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sup>42)</sup>

제 13조(c) 항에 의하면 “신용장이 그 제시될 서류를 기재하지 않은 채 조건만을 기재하고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P98역시 동일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문제발생소지가 있다. 즉, 어떤 조건이 제시될 서류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조건 모두를 서류비지정조건의 범주에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실무상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방식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조건이 제시될 서류의 기재없이 기재되었으나 그 조건에 대한 성취여부의 확인작업이 서류검토자인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속에 속하는 것일때,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대하여 은행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거래에 해를 야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를 반영하여 ISP98 4.11에서는 두 가지의 예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조건은 서류비지정조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3)</sup> 따라서

42) 신용장으로서 의도하여 발행된 약정에 서류비지정조건이 포함된 경우에 그 처리방법으로는 ① 서류비지정조건에 효력을 부여하면서, 당해 약정을 2차적인 채무 즉, 보증의 성격을 갖는 약정으로 변경시키는 방법(*Wichita Eagle & Beacon Publ'g Co., v. Pacific Nat'l Bank*, 493 F2d 1285(9th Cir. 1974) ② 그 조건을 무시하는 방법 ③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어떤 서류가 그러한 조건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무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그 결과 ②번제의 방법이 채택되었다. URDG 제 20조 (a) 항, 95 UCC 5-108(g) 항에서도 역시 동일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서류비지정조건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을 비난하는 학자도 있다(Roy Goode,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6, pp.11~12 참조).

43) 예를 들어,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그 문면상에 외부의 資料源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인데 그러한 조건들은 신용장상에 명시적으로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통해서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부의 자료원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비치되어 있어 언제나 일상적인 업무과정중에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외부의 자료원으로서 그러한 출판물들을 언급하는 것, 그리하여 그러한 출판물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은행원의 정상적인 업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본거래상의 사실에 대한 결정에 몰아넣은 작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경우는 비록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서류비지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은행원은 그 조건의 성취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4.11(c)(iii)참조).

ISP98 1.06 (d)와 4.11은 서류비지정조건에 대한 원칙을 채천명함과 동시에 제시된 서류를 통해 증명될 수 없는 조건 모두를 일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44)</sup>

㉠ 일관성 문제

제시된 서류의 일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설은행은 UCP 500 제 13 조 (a) 호에 따라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 뿐 아니라 제시된 서류 상호간의 일관성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ISP98은 상이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ISP98 하에서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의 조건과의 일치여부만을 심사, 의사결정하면 족하다.<sup>45)</sup>

㉡ 하자의 통지

ISP98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ISP98은 UCP 500과 마찬가지로 그 제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장 제 7 영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의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서류검토를 위해서 주어진 7일을 넘어 주어진 통지는 불합리하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더하여 3일 이내에 주어진 통지는 불합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UCP 500이 적용되는 거래에서의 불합리한 시간에 대한 기초로서 이 3일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46)</sup>

---

한편 ICC Position Paper에서도 어떤 조건이 신용장상에서 제시를 요구하는 서류와 연계되어 증명된다면 그러한 조건은 서류비지정조건이 아니라고 하여 경직된 해석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ICC Position Paper No.4(1994)).

- 44) 한편 본인은 ISP98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너무 확장해석하게 되며 기술된 바와 같이 신용장의 특정한 독립성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조문상에 'operational purview'라는 문구를 참조하여 어떤 조건이 과연 은행의 업무 범주속에 속하는 사안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ISP98 4.11(c)(iii)(iv)은 그 예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45) 본 논문 제 4 쪽 참조.
- 46) UCP에서는 제 5 차 개정인 UCP 500에 이르기까지 은행이 서류검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을 규정하여 왔고 다만 UCP500에서는 그 최장의 기한으로 제 7 영업일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기간과 하자의 통지와와의 관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연 은행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향유한 후 서류상의 하자통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하는 점이 불확실하였다. ISP98에서는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3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은행의 하자통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에서 그 은행이 사용한 시간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의 시금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된다(USCIB, "STATEMENT OF PRACTICE," *Documentary Credit World*, May

## (3)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양도는 제 6 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ISP98은 신용장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하다고 규정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어 UCP 500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ISP98은, UCP와 달리, 양도가능한 신용장을 발행한 경우에도 수익자의 양도요청에 개설은행이 합의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불필요하고 예외적인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sup>47)</sup> 물론 UCP 500 제 48 조 (c) 항이 개설은행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UCP 500과 ISP98사이엔 차이 없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의 양도는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본다면 이러한 리스크의 부담을 기피하는 개설은행은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주어지지만, 이와 달리 기타의 은행들은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할 기회가 사전에 부여되지 않는 탓에 그 동의가 필요하며 이것을 48 조 (c) 항에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양도은행의 범주속에 개설은행은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ISP98과 UCP 500과는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UCP 500하에서 개설은행은, ISP98에서와 달리, 수익자의 양도요청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ISP98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ISP98에서는 신용장상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2 회 이상의 전액양도가 가능하며, 분할양도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UCP 500과 명백히 차이가 있다.

1998, pp.23~26 참조); 참고로 개정미통일상법전 제 5 편에서는 UCP 500과 같이 제 7 영업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전 규정에서는 3 일을 규정하고 있었다(95 UCC 5-108(b), 62UCC 5-112(1)(a)); 합리적인 기간과 하자통지와의 관계는 拙稿, “信用狀來來에서의 禁反言法理에 관한 解釋,” 貿易商務研究 제 12 권, 韓國貿易商務學會, 1999, 2, 제 443~456 쪽 참조.

47) 拙稿, “信用狀統一規則과 改正美統一商法典의 信用狀의 讓渡規定의 解釋·適用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誌, 第 24 卷 第 3 號, 韓國貿易學會, 1999.12 참조; Georges Affaki, “ISP, UCP or URDG: What Are the Optimal Rules for Your Standby?,” *Documentary Credit World*, June 1999, p.36; Georges Affaki, “The ISP98, UCP, URDG and the UNICTRAL CONVENTION: Are They Really Complementary?,” *Letter of Credit Update*, May 1999, p.22.



#### (4) 신용장 대금의 양도

UCP 500에서는 신용장 대금의 양도를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8)</sup> 그러나 ISP98에서는 대금양도의 통지 이외에 동의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점은 95 UCC 제 5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sup>49)</sup> 지난 62년 UCC 제 5편에서는 단순한 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sup>50)</sup> 금번 개정에서 동의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95 UCC 제 5편의 경우에는 대금양수인이 신용장의 제시시에는 그 동의를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신용장제시의 경우에는 동의라는 요건이 대금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sup>51)</sup>

이는 몇몇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ISP98이 미국의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입안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같다.

한편 채권양도의 문제는 각국에서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그 규정들은 대체로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경우 ISP98은 국내법상의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 Ⅲ. 結 論

앞에서 여러번 언급하면서 강조한 바와 같이, ISP98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동안 준거규칙으로서 사용되어 왔던 UCP가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통한 원활한 거래를 위한 윤회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결점들이 노출됨에 따라서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ISP98이 그 명칭처럼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려면 동 규칙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많은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까

48) UCP500 Art.49.

49) 95UCC 5-114(c).

50) 62UCC 5-116(2)(a).

51) 95UCC 5-114(d).

은 장래에, ISP98이 범세계적으로 그 사용층이 확대되어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위한 독립적인 규칙으로서 인식될 것이라는 예상은, 동원칙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들과 정부 그리고 은행과 기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sup>52)</sup> 이는 ISP98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하기 이전인 1998년 말부터 이미 그 문면에 준거규칙으로 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기능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보증과 관련된 규칙, 그리고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과 OCC의 Interpretative Ruling 등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효과적인 사용 뿐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P98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들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한편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비판자들은 ISP98은 그 명칭처럼 국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ISP98이 미국의 은행들의 관행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은행들에게 특별히 유익하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오히려 UCP가 필요이상으로 간결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장황하지도 않기 때문에 유익하고 범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ISP98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분규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Commentary, "Banks Prepare for ISP98," *Letter of Credit Update*, Dec., 1998, p.14 참조). 어찌되었든 ISP98은 시장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이 충분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불확실성과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는 틀림없다.

## 參 考 文 獻

- 金榮勳, “信用狀去來에서의 禁反言法理에 관한 解釋,” 貿易商務研究, 第 12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9.2.
- , “信用狀統一規則과 改正 美 統一商法典의 信用狀의 讓渡規定의 解釋·適用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誌, 第 24 卷 第 3 號, 韓國貿易學會, 1999.12.
- 朴錫在,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活用上の 問題點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 梁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 徐正斗, 國際貿易法規, 제 3 판, 三英社, 1998.
- Affaki, Georges, “The ISP98, UCP, URDG and the UNCITRAL CONVENTION: Are They Really Complementary ?,” *Letter of Credit Update*, May 1999.
- Affaki, Georges, “ISP, UCP or URDG: What are the optimal rules for your standby ?,” *Documentary Credit World*, June, 1999.
- Byrne, James E.,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New Rules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UCCLJ.*, vol.32 fall 1999.
- Busto, Charles del, *UCP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Doyle, Michael, “ISP98: A Recipe of Disaster,” *Letter of Credit Update*, March 1999.
- Goode, Roy,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6.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1, 1995.
- Commentary, “Banks Prepare for ISP98,” *Letter of Credit Update*, Dec., 1998.
- First National Bank of Maryland: Ready of ISP as of 1 January 1999; Education Process Continues, *Documentary Credit World*, June 1999.
- General A/CN, 9/459, 23 April 1999, UNCITRAL.
- ICC Position Paper No.4(1994).
-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Fall 1997 Draft,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of Practice, Inc.
- USCIB, “STATEMENT OF PRACTICE,” *Documentary Credit World*, May 1998.

ABSTRACT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98) with  
Uniform Customs for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Kim, Young Hoon

Since January 1, 1999, traders, bankers and their counsels worldwide have available for their use the first set of rules exclusively dealing with standby letters of credit: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Numerous standbys have already been issued in the United States and worldwide subject to the new ISP.

The international banking community is anticipating an increasing demand from their customers to issue ISP-governed undertakings.

Before the adoption of ISP, traders and bankers had only the choice of issuing their standby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s(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 and, to a much lesser extent, to the ICC's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However, practice showed that UCP rules are not easily adapted to regulate transnational standbys. Indeed, UCP was conceived to govern documentary credits, which are intended to serve as a means of payment.

By contrast, standbys are means of guaranty. The core of UCP cannot therefore be appropriate for standby practices and, as a consequence, a number of UCP's provisions have to be excluded in the standby's text.

UCP's shortcomings indicated above fulfil the requirements of a key factor for the success of uniform rules. Indeed, to achieve success in the sense of meeting the market's acceptance, any such rules should fill a widely recognized need expressed by merchant community to which such rules are addressed.

The ISP clearly has such a vocation. Nonetheless, the already largely encumbered regulatory environment of guarantee devices can hardly go unnoticed.

The question therefore arises as to the proper place of ISP in such a context.

Key Words : UCP500, ISP98